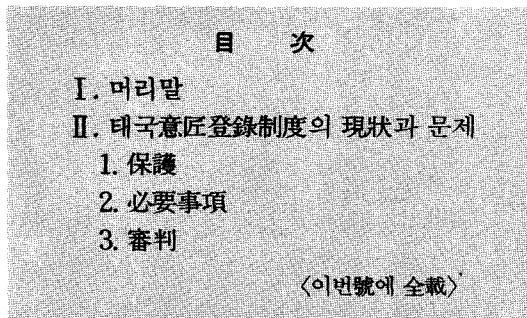


태국 意匠登録制度의 現狀과 문제



I. 머리말

197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태국 特許法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적해석이나 改革을 要하는 特許法의 규정은 많이 있지만 그것의 明確化 보다는 많은 行政規則이 지금도 發布되고 있어 發明 및 意匠을 包含하는 特許出願의 절차에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태국 特許시스템에 대한 WIPO 등의 국제지원 및 조력과 각국 特許廳과 대리인간의 상호협력 및 조력에 의하여 태국의 特許制度도 머지않아 括目할 만한 발전을 이루리라 예전한다.

II. 태국意匠登録制度의 現狀과 문제

1979년에 시행된 태국 特許法은 2가지의 다른 特許保護, 즉 發明特許와 意匠特許를 許容하고 있다.

1. 保護

特許法에서는 “意匠”은 生産物 및 특정의 外觀을 지닌 線 또는 色의 形態 또는 組合(Composition)을 의미하며, 공업제품 또는 수공예품의 型(Pattern)으로 원용된다.

特許法 第56條는 수공예품을 포함하는 상업제품의 신규의장에 그 法律에서 기인한 特許를 부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7조는 다음의 意匠은 新規性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규정한다.

가) 特許出願前에 태국에서 周知되었거나 또는 他人에 의해 널리 使用되어온 意匠

나) 特許出願前에 태국 또는 外國에서 문서 또는 印刷刊行物에 開示 또는 記述된 意匠

다) 特許出願前에 發表된 意匠

라) 상기 가), 나), 또는 다)의 意匠에 構造物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類似한 意匠

다시 말해서 意匠이 特許性을 가지는 데는 “질대신규성”이 요구된다.

意匠特許의 “存續期間”은 태국 出願日로부터 7년이다. 태국은 파리조약의 非同盟國이여서 基礎出願의 優先權을 주장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다시 말하면 최초 출원을 기초로 해서 特許가 許與된다.

絕對新規性의 요구 때문에 태국출원전에 신규성 심사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에 意匠出願을 한 者는 困難한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국가에서는 特許나 登錄은 出願日로부터 단기간, 예를 들면 약 2~3개월로써 인정되어 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出願인이 優先權을 주장할 수 없는 태국과 같은 국가에서 意匠保護를 求할 것을 결정할 때는 이러한 개시나 간행에 의해 新規性이 여

海外特許情報

러번 진정으로 상실되어진다.

또한 出願中의 意匠登録에 대한 보호는 가보호(Provisional protection) 되지 아니한다. 더욱 문제는 特許를 행하는데도 特許權者가 그 特許產物의 生產準備를 한 그것을 관계관청이 納得할 정도로 증명할 수 없을 경우, 特許權者는 타인이 特許產物을 外國으로 부터 수입하여 태국에서 販賣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이것은 다음에 인용하는 태국特許法 제77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 제77조 : 特許產物이 제조되거나 特許方法이 실시되기 전, 언제라도, 누구나 外國에서 제조되고 特許에 포함되는 생산품을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태국에 수입할 수 있다. 特許權者の 요구가 있으면, 또는 特許權者가 特許部(The Board of Patents)에 의해 규정된 規定과 조건에 따라 特許產物의 제조를 위한 准備를 할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장관은 特許부의 승인을 통해 이러한 수입을 금지한다.

特許產物의 제조가 된 경우에 있어서 본조의 3항에서 말하는 官報(The Government Gazette)에 발표후는 어느누구라도 태국에서의 무역을 위해 外國에서 생산된 特許產物을 생산물의 유통(Distribution)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를 除外하고 수입할 수 없다. 후자의 경우에는 어느누구도 行政規則集(The Ministerial Regulations)에 규정된 規則, 절차 및 조건에 따라 이러한 產物의 태국에의 수입을 特許부에 신청할 수 있다.

特許產物의 제조를 한 경우에는 제조자는 소관 공무원에 알리고, 소관공무원은 조사를 하여 特許가 그와같이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장관이 官報에 생산물, 방법 또는 의장이 실시되고 있는 것을 公表할 수 있음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公表는 公表日로 부터 60日후에 効力を 발생한다.

2. 必要事項

意匠出願에 있어서 태국 特許廳은 方式書類

以外에 다음의 것을 요구한다.

- 가) 도면 또는 사진에 의한 意匠의 표시
- 나) 意匠에 사용되는 物品 종류의 指定
- 다) 명료하고 간결한 클레임

태국 特許法 및 發布된 여러가지의 行政規則은 意匠의 表示에 관한 요구에 대해서 도면 / 사진은 A4용지를 사용하는 것 및 사진을 黑白으로 해야되는 것을 除外하고, 明確한 規則을 정하고 있지 않다.

도면에 있어서 이러한 規則의 결여는 表示物, 특히 意匠圖面을 準備하는 경우 매우 困難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예를 들면 意匠의 透視圖를 表示하는 도면이 요구되거나 요구되지 않기도 한다. 많은 도면에 있어서는 음영선은 제거되는 것이 요구되지만 그밖의 경우 남을 것이 요구된다.

더욱 特許廳의 異議에 應答하는 때에 새로운 도면을 준비하는 것은 경비와 시간이 많이 들고 그 결과 特許 發行을 더욱더 지연시킨다.

다른 문제는 현재까지 전문적 特許도면회사가 태국에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대개의 경우 特許代理人은 出願人이나 그 代理人에 정식도면을 제공하게 依賴해야 한다.

3. 審判(Appeals)

新規性 결여 등의 이유로 出願을 거절하는 장관의 命令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심판을 請求할 수 있다.

심사청구기간은 命令 或은 결정의 受領後 30日이다.

태국 特許出願의 出願人은 대개 外國에 주소를 두고 있으므로, 거절에 대한 이러한 짧은 회답기간은 대리인과 청구인간의 충분한 의사전달의 시간과 태국 대리인의 심판청구서를 충분히 연구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한정하는 것이 된다.

審判請求書는 장관의 命令 또는 결정에 대하여 행해진 심판결정에 의해서 特許部(The Board of patents)에 제출된다.

과거의 事例를 보면 심판에 대한 特許部의

海外特許情報

결정이 통상적으로 3~4년 걸렸었다. 출원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되어 特許가 인정된 경우에도 特許權者가 이 인정된 特許를 영유함과 동시에 實施하기 위해서는 불과 1년 또는 2년밖에 남지 않는다. 왜냐하면 意匠特許 存續期間은 태국에서의 출원일로부터 7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狀況에서 많은 出願人은 이러한

출원을 유지하는 것은 無益한 것으로 생각하기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태국대리인이 직면하는 이런 많은 문제 해소를 위해 태국 特許廳은 현재 意匠特許의 發行을 促進하는 일환으로 審查係屬中の 적체를 위해 努力하고 있다. 그 결과 意匠特許가 인정되는 것에는 종래 3~4년이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현재는 1.5~2.5년이 소요된다. <♣> <白仁洪 記>

特許·實用新案 分類公報 購讀申請案內

本會에서는 現行 合本公報 發行과 索行하여 國際特許分類(IPC)의 8個 Section別 特許·實用新案 分類公報를 發刊코자 아래와 같이 購讀申請을 받고자 하오니 同趣旨를 惠涼하시어 貴社의 必要 部數를 소정 신청서에 의거 本會로 送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請處 : 본회 공보보급과(TEL: 557-1077~8, FAX: 554-1532)

申請方法 : 신청서에 의한 우편, 전화 및 FAX申請

아이디어뱅크 안내

韓國發明特許協會에서는 產業 및 生活 아이디어를 發掘하여 이를 實用化될 수 있도록 關聯企業등에 連繫시킴으로써 汎國民의인 發明風土를 造成하고자 다음과 같이 아이디어 뱅크를 開設하였으니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對象 : 產業 및 生活 아이디어

◎申請方法 : 直接訪問, 書信 또는 電話

◎接受處 : 韓國發明特許協會

우편번호 135-090 서울 江南區 三成洞 143-19

◎接受된 아이디어의 處理

○分期別로 審查하여 實用化 可能性이 있다고 判斷되는 아이디어는 關聯企業에 實施斡旋

○特許·實用新案·意匠으로 設權可能하다고 判斷되는 아이디어는 出願誘導

○申請接受된 優秀한 아이디어는 綜合審查後 年末에 施賞

※ 기타 자세한 것은 本會 發明振興部(557-1077~8)로 문의바랍니다.